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11
----------	------

2018년 3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12월 15일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0명)
2. 회부일자 : 2017년 12월 20일
3.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2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개정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사상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기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대상자로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는 144명(의사자 84명, 의상자 60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표> 최근 4년간의 의사상자 지원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연 도	사 업 명							
	특별위로금 지급						기념표석 설치 지원	
	의사자		의상자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35	1,050,000	20	44,750	55	1,094,750	-	-
2015년	5	150,000	1	10,000	6	160,000	-	-
2016년	4	120,000	2	3,500	6	123,500	-	-
2017년	2	60,000	2	8,500	4	68,500	-	-
계	46	1,380,000	25	66,750	71	1,446,750	-	-

※ 특별위로금은 '13년부터 최초 지급하였으며, '14년(55건) 지급건수는 이전 대상자('78~'12)들에 대한 소급건수가 포함되어있음('12년 조례개정시 소급지급규정마련)

※ 기념표석은 의사자의 유족의사에 따라 총 14건('97~'11년) 설치, '12년 이후 설치된 바 없음

## 2 의사상자 표창 필요성 및 검토 의견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의사상자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음.
- 이를 반영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명시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며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적조항(제1조)을 설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표창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입법상의 불비(不備)로 사료됨.
- 개정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법과 조례 비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상훈법에 상응하는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표창 수여 근거 조문 없음.>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 3 결론

-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는 점에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라고 하겠음.
- 중앙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의사상자에 대한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가 있으나,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차원의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중앙정부의 「상훈법」에 상응하여,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한 명시적인 표창 수여 근거 조문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 의사상자에 대한 표창은 의사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을 표시하며, 후대의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행 조례의 입법상 불비(不備)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1

발의년월일 : 2017년 12월 15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 서윤기 · 이순자  
유광상 · 김인호 · 황준환  
송재형 · 최판술 · 김상훈  
문영민 의원(10명)

##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예우 등) (생   략)</p> <p style="margin-left: 40px;"><u>&lt;신   설&gt;</u></p>	<p>제6조(예우 등)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p> <p>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u>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 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u></p>